



2008년도 자가용전기설비 불합격내용 분석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6. 불합격 분석 및 대책

◎ 저압설비

시공별 불합격 현황은 용량산정 불량(39.1%), 시공불량(16.9%), 접지불량(12.9%), 미시공(16.1%), 신고내용상이(6.5%) 순으로, 특히 전선·차단기깨폐기의 용량산정 부적정으로 불합격된 사례가 많음

◎ 인입선 및 간선

- ☞ 원 인 : 사용전선의 허용전류 미달, 규격전선 미사용 및 시공 불량
- ☞ 대 책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준한 규격전선 사용과 부하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여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3조, 제70조~제77조, 제79~제84조, 제87조, 제89조~제91조, 제92조~94조, 제100조, 제101조

[개선사례]

부적합 내용	개선 후
손상된 전선 사용	전선 교체

◎ 저압 과전류차단기

- ☞ 원 인 : 간선 허용전류 이상의 차단기 시공, 차단용량 부족, 과전류차단장치 및 지락차단장치 미시공
- ☞ 대 책 : 정격용량의 차단기 사용과 지락차단장치 설치장소에는 누전차단기 설치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37조, 제38조

◎ 배전반 ·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 ☞ 원 인 : 접지 미시공 및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 대 책 : 400V 미만 저압인 경우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는 제3종접지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8조, 제33조

○ 콘덴서, 이동용기기, 옥내공사 : 사용기기에 부적정 전선사용, 사용전압에 미달된 기기 사용, 옥내 시설공사 부적정

- ☞ 대 책 : 부하에 맞는 콘덴서 설치, 옥측 또는 옥외에 사용하는 이동용기기 및 배선은 기준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72조, 제180조~제19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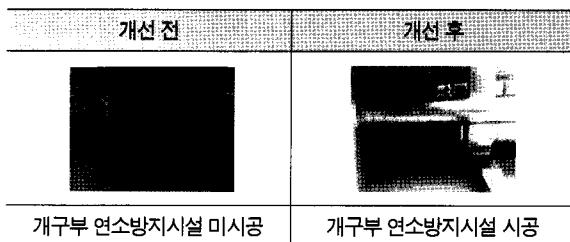
(지하 75cm)까지 합성수지판 또는 몰드 등으로 보호하고,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9조, 제102조, 제103조, 제135~137조, 제194조

○ 고압·특별고압 설비

시공별 불합격현황은 접지불량(31.8%), 시공불량(21.3%), 미시공(16.9%), 기기불량(7.7%), 공사계획신고 내용과 상이한 설비(6.5%), 용량산정 불량(3.7%) 순으로, 특히 접지 미시공과 접지저항 미달에 의한 불합격된 사례가 많음.

[개선사례]



○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

- ☞ 원 인 : 접지 미시공 및 접지저항 기준치 초과
- ☞ 대 책 : 전기기계기구 철대 및 외함에는 기술 기준에 맞는 굵기의 접지선을 선정하여 접지종별 접지저항 기준치 이내로 접지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8조~제23조, 제26조, 33조

○ 충전부 이격거리

- ☞ 원 인 : 특고압 충전부와 조영재 및 식물과의 이격거리 미달, 큐비클내 충전부간 이격거리 미달
- ☞ 대 책 : 가공전선 상호간, 건조물과의 접근거리, 식물과의 이격거리, 충전부와 대지간의 이격거리는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준하여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80조, 제88조, 제89조, 제108조, 제126조

○ 인입선 및 전선로

- ☞ 원 인 : 인입케이블 방호장치 및 전선관 미시공, 지중인입선의 매설깊이 미달,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케이블트레이 시공
- ☞ 대 책 : 인입선의 예비케이블 시공(공사계획 신고)과 단말처리, 제1종 및 제2종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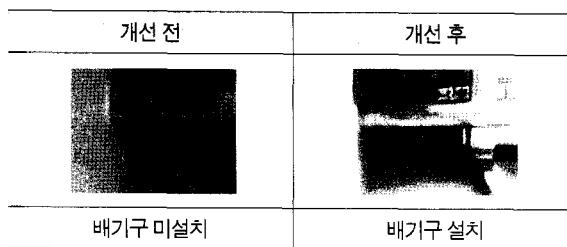
○ 발전설비

- ☞ 원 인 : 발전기설에 환기시설 미시공, 발전전 압 조정장치 및 비상정지 불량, 발전기 외함과 중선선 접지 미시공, ATS

절체 불능

- ☞ 대 책 : 기술기준에 의거 발전기실에 환기시설 설치,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한 중성점 접지 시공
-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72조, 판단기준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47조, 등

[개선사례]



- ◎ H변대의 지상고 이격거리 미달, 전주근입 부족, 캐이블트레이공사시 난연성케이블 미시설

- ☞ 대 책 : 판단기준에 준하여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63조, 제19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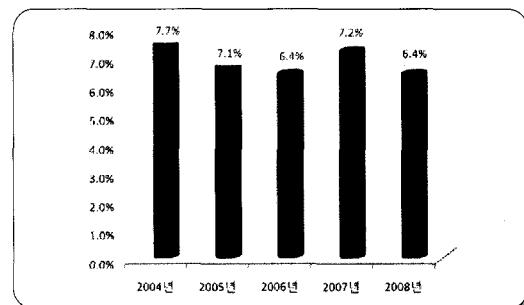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상이

- ☞ 원 인 : 설계시 공사계획신고내용과 현장설치시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기기 선정 및 시공
- ☞ 대 책 : 변압기, 전선로, 차단기 등의 주요기기는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일치하게 시공하며, 변경시 변경공사계획신고를 하고 시공하여야 함
- ☞ 관련근거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III. 정기검사분석

1. 검사실시 및 불합격 현황

- ◎ 2008년도 정기검사실시건수는 63,162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6% 증가하였으며, 불합격 건수는 4,065건으로써 불합격률은 6.4%임
- ◎ 경미한 부적합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된 건수는 14,172건으로서 시정률은 22.4%임



[도표 1] 연도별 불합격률 현황

- ◎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전년대비 0.8% 감소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불합격률 6~7%대 수준을 유지함
- ◎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사용전검사보다 다소 높은 것은 최초 검사후 전력기기의 경년 변화 및 노후화에 따른 기기 결함이 주요인임
- ◎ 검사결과 경미한 불합격사항에 대해서는 검사원이 봉사활동 등 현장시정 조치를 함에 따라 불합격률이 감소됨



- 또한, 불합격 사례를 대외기관에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으로 부적합 설비 개선이 향상됨

[표 1] 최근 5년간 정기검사 실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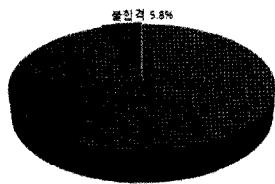
연도별	검사건수	불합격 건수	불합격률(%)	현장시정 내역		비고
				시정건수	시정률(%)	
2004	47,231	3,614	7.7	9,991	21.2	
2005	52,539	3,736	7.1	8,393	16.0	
2006	58,464	3,725	6.4	9,619	16.5	
2007	59,260	4,266	7.2	11,641	19.6	
2008	63,162	4,065	6.4	14,172	22.4	

2. 검사 세부 불합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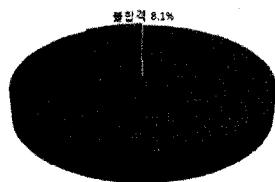
- 정기검사는 수전설비와 발전설비로 구분되며, 발전설비는 고압이상 자가용수전설비를 갖춘 고객에 설치된 비상용예비발전기가 대부분임
- 2008년도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실시 건수중 수전설비가 71.7%, 발전설비가 28.3%점유했으며, 사용전검사보다 정기검사시 발전설비 점유율이 더 많은 것은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저압 설비에서 발전설비를 갖춘 경우인 것으로 판단됨
- 2008년도 정기검사 건수 중 총 63,162건 실시건수 중 최초검사 실시건수는 59,324건, 불합격 4,031건으로 불합격률은 6.8%, 재검사건수는 3,838건으로 부적합건수 34건으로 불합격률은 0.9%임

[표 2] 2008년도 설비별 정기검사 실시건수 및 불합격 현

설비구분	검사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	점유율 (%)
수전설비	최초검사	42,825	2,584	6
	재 검 사	2,434	26	1.1
	소 계	45,259	2,610	5.8
발전설비	최초검사	16,499	1,447	8.8
	재 검 사	1,404	8	0.6
	소 계	17,903	1,455	8.1
계	최초검사	59,324	4,031	6.8
	재 검 사	3,838	34	0.9
	소 계	63,162	4,065	6.4



〈도표 2〉 수전설비 불합격 현황



〈도표 3〉 발전설비 불합격 현황

3. 설비별 부적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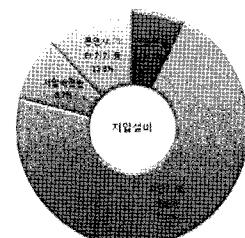
- 2008년도 정기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고객의 설비별 현황은 [표 3]와 같으며, 저압 설비의 경우에는 차단기 및 개폐기의 기기결함에 따른 부적합의 점유율이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설비 중 저압배전반 및 배선에서 각각 8.7%, 7.3%를 점

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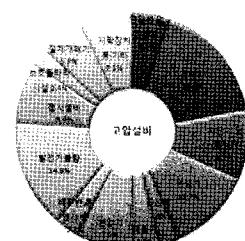
- ◎ 고압이상 설비의 경우에는 개폐기 16.9%, 변성기류 11.7%, 발전기 14.9%의 점유율 순으로 나타남
- ◎ 설비별 부적합 점유율이 주로 차단기, 개폐기 등 주요기기에 나타난 것은 사용빈도가 높아 과부하 전류를 개폐함에 따른 손상 및 노후화에 따른 설비 불량으로 나타남

[표 3] 설비별 부적합 현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저압 설 비	인입선 및 간선	44	7.3
	차단기 및 개폐기	430	71.7
	저압배전반	52	8.7
	콘덴샤, 기타 기기 등	74	12.3
계		600	100
고압 이상 설비	인입선 및 전선로	287	5.2
	개폐기(ASS,LBS,INT 등)	932	16.9
	차단기 및 계전기	534	9.7
	변성기(MOF,CT,PT,ZCT 등)	645	11.7
	뮤즈류(COS,PF 등)	142	2.6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고압 이상 고객	피뢰기(LA,SA 등)	212	3.8
	변압기	437	7.9
	배전반, 콘덴샤, 애자류, 등	182	3.3
	발전기(동작상태불량)	823	14.9
	접지설비	463	8.4
	보호율터리시설	133	2.4
	절체개폐기	325	5.9
	지락장치 등 기타	404	7.3
계		5,519	100



〈도표 4〉 저압 설비별 부적합 현황



〈도표 5〉 고압 설비별 부적합 현황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 ◎ 2008년도 정기검사 실시결과 부적합 고객의 시공별 현황은 [표 4] 와 같으며, 저압설비의 경우에는 차단기, 개폐기의 동작불량이 57.3%로 가장 많고, 용량산정 부적정과 기기불량이 각각 11.3%, 9.0%이며, 절연, 접지저항 미달 및 저압기기의 시공불량 등의 부적합 유형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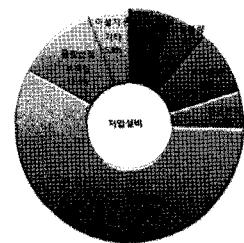
- ◎ 고압이상 설비의 경우는 고압차단기, 계전기, ATS 절체개폐기 등 고압기기의 동작 상태불량이 35.1%로 가장 많으며, 계통접지의 저항치 미달, 기기의 미접지로 15.8%, 고압기기의 경년변화와 기기불량이 각각 15.5%, 13.1%로 나타남

- 시공별 부적합 점유율이 주로 기기 동작불량이나 경년변화가 많은 것은 사용중인 설비에 대한 검사로서 기기의 수명경과와 관련이 깊고, 접지 부적합은 미접지 보다는 접지저항치가 미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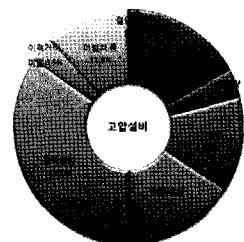
[표 4] 시공별 부적합 현황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저 압 설 비	절연·접지불량	38	6.3
	시공불량	30	5.0
	기기불량	54	9.0
	경년변화	31	5.2
	동작불량	344	57.3
	용량산정부적합	68	11.3
	미설치 등 기타	35	5.8
	계	600	100
고 압 설 비	부적합 현황	건수	점유율 (%)
	절연불량	71	1.3
	접지불량	949	15.8
	시공불량	243	4.0
	기기불량	789	13.1
	경년변화	928	15.5
	동작불량	2,107	35.1
	이격거리미달	212	3.5
	미설치 등	712	11.9
	계	6,011	100%

주) 시공별 부적합 건수는 동일 고객내에서 2건 이상 중복 건수가 포함됨



[도표 6] 저압설비 시공별 부적합 현황



[도표 7] 고압설비 시공별 부적합 현황

- 따라서 정기검사 부적합유형의 대부분은 차단기 등 고압기기의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나 경년변화에 따른 기기결함이 주원인인 관계로 안전관리자의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5. 불합격 분석 및 대책

◎ 저압설비

시공별 불합격현황 중 동작불량(57.3%), 용량산정불량(11.3%), 기기불량(9.0%), 절연·접지불량(6.3%) 순으로 기기의 동작상태 불량이 대부분이며, 기타 전선, 차단기·개폐기의 용량산정 부적정임

- 저압수용가 불합격 유형은 전기설비 노후로 인한 차단기 및 개폐기 등의 동작 불량과 용량산정 부적

정, 기기불량이 불합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경년변화에 따른 절연불량과 기기 미접지 유형임

- ☞ 대 책 : 주기적인 전기설비 점검으로 기기의 노후로 동작상태가 부적정한 기기는 교체하며, 차단기·개폐기·기기 등을 교체할 때는 적정용량으로 교체
-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조, 제169조, 제170조, 제175조, 제176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노후된 배전반	배전반 교체

◎ 고압이상 설비

◎ 최근 고압수용가 정기검사 불합격 유형은 전기설비(개폐기, 차단기 및 계전기 등)의 경년변화로 인한 동작불량과 접지저항의 기준치 초과 및 접지선탈락으로 인한 접지불량, 기기불량이 대부분임

- ☞ 대 책 : 차단기, 개폐기 등 개폐가 빈번한 기기는 접점손상 여부를 주기적인 진단 또는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조, 판단기준 제17조~제19조, 제34조, 제36조

[개선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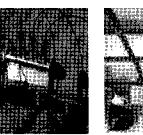
개선 전	개선 후
	

사용전압 380V 콘센트에 250V콘센트로
정격 480V 콘센트로 교체

◎ 또한, 일부 배전반 및 배선의 방호장치 등의 부적합과 경년변화로 인한 간선 등의 절연 저항 미달 사례 발생

- ☞ 대 책 :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주기적인 전로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관리
(정전이 곤란한 경우 누설전류 1mA 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2조, 제13조, 제171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노후화로 개폐불능 → 신품으로 교체

◎ 전로 및 회전기, 정지기기의 노후화에 따른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미달로 인한 불 합격과 가공전선



로지지 금구류의 파손에 따른 불합격사항 및 지중 전선로의 지중함 내의 배수시설이 불합격한 경우 도 나타남

- ☞ 대 책 : 년 1회 이상 전로 및 고압기기에 대한 절연내력시험을 외부 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지지물에 대하여 육안점검을 실시
-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조, 판단기준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36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애자 파손	애자 교체

○ 또한 변성기류의 접지불량, 기기노후화에 따른 동작상태 불능으로 불합격된 경우와 전선로의 이격 거리의 미달 등 고압기기 충전부와 대지간의 이격 거리 미준수 사례도 나타남

- ☞ 대 책 : 계기용변성기 2차측 전로의 접지 상태를 점검하고, 전선로는 건조물 또는 전선로 상호간 접근거리를 점검하고, 기기 종설시 충전부 이격거리를 준수하거나 감리?감독 철저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17조, 제 26조, 제108조, 제129조~135조

● 기타 수전설비 울타리 보호시설 규정 미준수 사례 와 충전부 이격거리미달 등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H변대 주상설비의 노후화로 인한 불합격 사례도 발생함

- ☞ 대 책 : 고압이상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에 울타리?감 등의 시설을 점검하고 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는 점검 및 작업이 용이하도록 시공
- ☞ 관련근거 : 판단기준 제44조, 제61조

[개선사례]

개선 전	개선 후
노후화로 개폐불능	신품으로 교체

● 발전설비의 불합격 점유율이 14.9%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압수용가의 대부분의 발전설비가 비상용발전기로서 자주 가동하지 않아 시공 불량 및 비상정지가 불가능한 경우와 ATS 등의 절체 개폐장치 미동작한 경우 등으로 나타남

- ☞ 대 책 : 노후되거나 소손된 AVR이 미수리된 상태로 있어 과전압 유기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전에 점검과 용량이 적은 발전기도 과전압 표시나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함
- ☞ 관련근거 : 기술기준 제22조, 제72조

○ 또한, 발전설비의 접지불량은 접지 저항치 미달, 접지선 탈락 및 중성점접지 시공 불량 등으로 나타남

☞ 관련근거: 판단기준 제19조, 제27조, 기술기준 제72조 등.

